

##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정본입니다.

사건 2021타채1080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최윤서 (820226-2227014)  
오산시 발안로 1355, 101동 1804호(누읍동, 립아파트) 입원주사보 주유진



채무자 권용훈 (750519-1245212)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6길 15-12 (망우동)

-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성남시 분당구 관교역로 231, 에스동 5층 (삼평동, 에이치스퀘어)  
대표이사 윤호영
  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대표이사 허인
  3.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대표자 은행장 윤종원
  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대표이사 진옥동
  5.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대표이사 권광석
  6.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대표이사 지성규

###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청구금액

금 4,163,000원(청구채권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

### 이 유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03420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

사법보좌관

이승호



-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참조).
  3.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
  4.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 별 지 목 록

1. 전체 청구금액 : 4,163,000원 중 제3채무자 별로 아래와 같이 청구함  
금4,100,000원(대여금)  
금61,200원(집행비용:송달료)  
금1,800원(집행비용:인지액)

1. 주식회사 카카오뱅크(KakaoBank Corp.)에 대하여 금2,663,000원
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금300,000원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금300,000원
4.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금300,000원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금300,000원
6.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300,000원

채무자 권용훈(750519-1245212)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유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유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만기가 빠른 것, ③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 1항 7호,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